

# 계절학기 운영 규정

개정 2019.04.17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계절학기 개설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사업무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(설치기간)

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로 구분 개설하고 방학중에 설치 운영하되, 이에 부수되는 운영방법은 총장이 정한다.

## 제3조 (개설과목)

계절학기 개설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개설한다.

## 제4조 (수강대상)

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당해 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
- ② 복학, 편입학, 재수강 등의 사유로 학점관리상 필요한 자
- ③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## 제5조 (신청학점 및 수업시간)

- ①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4.09.15.>
- ② 수업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## 제6조 (성적평가)

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

## 제7조 (성적 및 학점인정)

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과목별 성적과 학점은 취득학기의 정규성적 및 학점으로 인정한다.

## 제8조 (교과목 선정 및 공고)

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교무팀와 담당교수가 대상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말고사 실시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뒤 계절학기 시행 일주일전까지는 개설공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4.17.>

## 제9조 (수강신청 및 강좌개설)

- ① 수강희망자는 소정기일 내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강료를

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전(前) 학기 학점 미 취득자의 수강신청은 재수강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열(학과)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강좌개설 최저 신청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, 개설인원이 미달된 과목은 강좌 미개설 공고 후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수강료)

계절학기 수강료는 학기별로 책정하되 신청학점단위로 징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적정금액은 총장이 정한다.

제11조 (세부사항)

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09.1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